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 월 3 일

여 수 시 장



2024. 7. 3.

여수시 조례 제2096호

붙임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96호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6조제2호 중 “실종예방·대응”을 “실종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

제7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 4. (생 략) <신 설> <u>5.</u> (생 략)	제6조(지원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실종대응 ----- ----- ----- ----- 3. · 4. (현행과 같음)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 ② (생략)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 ② (생략) ③ ----- ----- 없으면 -----.